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-8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각 동의 주소지 관할 통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고지를 시행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(안 제22조의2)

3. 개정근거 : 행정안전부 주소전환추진단-255(2010.9.1)호

4. 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통장(409명)×100천원=40,900천원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0.10.14. ~ 11.3.(20일간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(2010.11.16.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라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도로명주소의 고지 등)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각 동의 주소지 관할 통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고지를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	< 신 설 >	<p><u>제22조의2(도로명주소의 고지 등) 법 제18조제2항</u> <u>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도로명</u> <u>주소를 각 동의 주소지 관할 통장을 통하여</u> <u>직접 방문고지를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</u> <u>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	